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5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한민수·최민희·허종식

한준호 • 이해민 • 정춘생

황정아 · 서왕진 · 이원택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4 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음(안 제2조).
- 다.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안 제3조).
- 라.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고,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에서 균등하게 선정된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마. 국민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함(안 제 9조).

- 사.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안 제18조).
- 아.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인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 자.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안 제24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 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소환사유) ①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한다.
 - ②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③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한다.
- 제3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

- 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사무의 일부를 국민소환투표 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국민소환투표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5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에서 균등하게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②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4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중 국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국민소환투표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 참여·투표방법, 그 밖에 국민 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소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 제8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국회의원에 대하 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국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2. 국회의원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3.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제10조(서명요청 활동) ①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

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 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 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 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에 한정한다)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 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1. 국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 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5.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6. 해당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우, 후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자(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임직원
-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12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제 10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 1. 국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 명
 - 6. 강요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

- 으로 판정되어 제8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기타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국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 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2. 제9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3. 국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 부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4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 국회의원 및 국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회의원(이하 "국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 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 다.
- 제15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국민소환투표일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소 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①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

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된 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투표를 한다.
- 제18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 제19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국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 제20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한다)할 수 있다.
 - ②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국민소 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69

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제8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은 각각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사항"으로 본다.

- 제22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제21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환투표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민소 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02조를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③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4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 제23조(권한행사의 정지) ①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 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정지 기간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 제24조(국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②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 다.

- 제25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없다.
- 제26조(국민소환투표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소환투표권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22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국 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 제26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195조부 터 제20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다.
 -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 ·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 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 4. 국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 무의 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 한 경비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9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국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국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국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국민소

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안"은 "국민소환투표안"으로 본다.

②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 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 제30조(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

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죄 및 제40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죄 및 제40조의 과태료에 해당하 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33조(벌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 인(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거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 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 5.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 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국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 3. 허위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 4.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 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 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 제36조(벌칙)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2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 2. 제20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 표운동을 한 자
 -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 제38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 3.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9조(이익의 몰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받

- 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40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 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 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